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55호 2021. 12. 2.(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95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796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797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798호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799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549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6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548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7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조례 제179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을 ““재향군인회”란”으로, ““사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사천시 재향군인회””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군인”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으로,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조례 제179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전담요원)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될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분리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조례 제179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제6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조례 제179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해체허가를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통장, 마을협의체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대형 공사 차량”이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10. “절대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11. “상대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등으로부터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2. “주택건설공사”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하고 시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⑥ 제3항의 안전관리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의 안전관리계획서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교통분야의 위원은 사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 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사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⑧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건의 당사자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자문을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상정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시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민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④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공사장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조례 제179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이”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가”를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조 제2호”를 “제29조제2호”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다음”으로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공사장배출자”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영 제38조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8조의 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1. 12. 2.>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16조제4항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폐기물포대에 배출)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7.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8. 발포 합성 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9.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재활용가능한 의류는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전용수거함에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세탁 후 투명비닐 등에 담아서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12. 영농 폐기물류	·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	- 폐비닐은 개인 및 마을(단체)별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로 구분하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사 천 시 공 보

제 755 호

사천시 공고 제2021 -1549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 12. 2.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 12. 2. ~ 2021. 12. 16.(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01조5138	세브링	TRAN NGOC ****	2021.11.29	명의이전, 폐차말소 등 후속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출국한 외국인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조치코자 함.
25루0817	뉴아반떼엑스디	ZHANG YU****	2021.11.29	명의이전, 폐차말소 등 후속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출국한 외국인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조치코자 함.
02누3316	아반떼오토메틱	MIRZAJONOV MIR*****	2021.11.29	명의이전, 폐차말소 등 후속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출국한 외국인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조치코자 함.
24루6018	리오	TENNAKOON MUDIYANSEL *****	2021.11.29	명의이전, 폐차말소 등 후속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출국한 외국인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조치코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공고 제2021-1548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나.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팀 신설 등)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결과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가. 건설과의 분장사무 이관·조정(안 제8조제5항)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호	건설기계검사·등록 및 지하수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지하수 업무 상하수도사업소 이관
3호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나. 우주항공과의 분장사무 이관·조정(안 제8조의2제2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호	국가우주항공산업단지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원	항공우주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호	항공우주 특화산업단지 지원사업	삭제	산업입지과 이관

다. 산업입지과의 분장사무 신설(안 제8조의2제3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6호	신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상하수도사업소의 분장사무 신설(안 제13조제5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7호	신규	지하수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마. 부읍·면장의 직급 조정(안 제16조 별표 2)

- 1) 서포면: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②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가. 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1) 「지방자치법」 제23조 →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이관 및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1) 건설과: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무 이관(상하수도사업소)
- 2) 우주항공과: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보상에 관한 사무 삭제

다.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4)

- 1)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무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③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가.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1) 정원의 총수: 972명 → 984명(증 12명)

2) 6급: 246명 → 247명(증 1명)

가) 행정: 49명 → 50명(증 1)

3) 7급: 259명 → 273명(증 14명)

가) 행정: 55명 → 70명(증 15)

나) 사회복지: 13명 → 16명(증 3)

다) 농업: 1명 → 2명(증 1)

라) 시설: 16명 → 19명(증 3)

마) 행정+세무: 7명 → 8명(증 1)

바) 행정+사회복지: 11명 → 10명(감 1)

사) 행정+전산: 4명 → 5명(증 1)

아) 행정+공업: 2명 → 1명(감 1)

자) 행정+시설: 28명 → 24명(감 4)

차) 공업+환경: 0명 → 1명(증 1)

카) 행정+공업+환경: 9명 → 7명(감 2)

타) 행정+세무+사회복지: 8명 → 7명(감 1)

파) 행정+공업+보건+시설: 1명 → 0명(감 1)

하) 운전: 4명 → 3명(감 1)

4) 8급: 229명 → 226명(감 3명)

가) 행정: 52명 → 55명(증 3)

나) 행정+전산: 4명 → 2명(감 2)

다) 행정+농업: 4명 → 3명(감 1)

라) 행정+시설: 20명 → 18명(감 2)

마) 행정+공업+농업: 0명 → 1명(증 1)

바) 행정+사회복지+시설: 3명 → 2명(감 1)

사) 행정+농업+시설: 2명 → 1명(감 1)

5) 9급: 148명 → 147명(감 1명)

가) 행정: 29명 → 33명(증 4)

나) 사서: 0명 → 2명(증 2)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 다) 시설: 10명 → 11명(증 1)
- 라) 행정+시설: 11명 → 8명(감 3)
- 마) 행정+해양수산: 2명 → 1명(감 1)
- 바) 사무운영: 5명 → 1명(감 4)
- 6) 전문경력관(나군): 0명 → 1명(증 1명)
- 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0명 → 1명(증 1)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사천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 본청”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우주항공산업단지”를 “항공우주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출산업지원”을 “수출산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하수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2의 제목 중 “제15조의 2”를 “제16조”로 하고, 기관별 서포면란 직급란 중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를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u>」 제2조에 따라 시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u>」 제2조에 따라 <u>사천시</u> ----- ----- ----- ----- -----.</p>
<p>제2조(직무) ① <u>시 본청</u>의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③ (생략)</p>	<p>제2조(직무) ①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 본청-----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본청·직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과와 직속기관의 과 및 사업소, 읍·면·동의 세부 사무분장은 <u>시장</u>이 따로 정한다.</p>	<p>제3조(본청·직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 분장사무) ----- ----- -----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제8조(안전도시국) ① ~ ④ (생략)</p> <p>⑤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건설기계검사·등록 및 지하</u></p>	<p>제8조(안전도시국)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u>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사업,</u></p>

수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⑥·⑦ (생략)

제8조의2(항공경제국) ① (생략)

② 우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우주항공산업단지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원

2. 항공우주 특화산업단지 지원 사업

3.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수출산업지원

4. ~ 7. (생략)

③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제13조(소장의 직급 등) ① ~ ④ (생략)

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7.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항공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항공우주산업 -----

<삭제>

3. ----- 수출산업 지원

4. ~ 7.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소장의 직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삭제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7. 지하수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3조”를 “「지방자치법」 제29조”로 하고,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부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별란 중 건설과란의 단위업무란의 1. 건설관리란 세부 사무명란 중 8.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관계란부터 13. 지하수특별회계 운영란까지를 삭제하고, “14.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8.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15.건설기술자 신상 변동 신고”를 “9. 건설기술자 신상 변동 신고”로, “16.전문건설업자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를 “10. 전문건설업자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로, “17. 전문건설업 등록증 (수첩) 재교부신청”을 “11. 전문건설업 등록증 (수첩) 재교부신청”으로 하고, 소관부서별란 중 우주항공과란의 단위업무란의 6.산업단지조성란부터 7.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란까지를 삭제하고, “8.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을 “6.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9.기업지원 및 관리 업무”를 “7.기업지원 및 관리 업무”로, “10.중소기업제품 판매 업무”를 “8.중소기업제품 판매 업무”로, “11.노동행정 및 기업체 실업대책”을 “9.노동행정 및 기업체 실업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대책”으로, “12.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10.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13.근로자종합 복지관 운영”을 “11.근로자종합 복지관 운영”으로 한다.

별표 4의 소관부서별란 중 상하수도사업소의 단위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 과 당 관 장	사 업 소 장	국·소 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상 하 수 도 사 업 소	32.지하수 개발	1.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관계							
		가.지하수개발 이용 인허가	기안		○				
		나.지하수개발 이용 변경 허가	기안		○				
		다.굴착행위 신고	기안		○				
		라.지하수개발 준공	기안		○				
		마.지하수개발 종료신고	기안		○				
		2.지하수 수질검사	기안		○				
		3.방치공 관리	기안		○				
		4.지하수시공업체 등록 관리	기안		○				
		5.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기안		○				
6.지하수특별회계 운영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렬별”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로 한다.

제2조 중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내용 중 의회사무국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u>직렬별</u>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직렬별 정원)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u>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u>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제1조(목적) ----- ----- ----- ----- ----- <u>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u> ----- -----.</p> <p>제2조(직렬별 정원) ----- -----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u> ----- -----.</p>

【별 표】

사천시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984	516(3)	21	145	54(1)	27	124	97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53	514(3)	21	116	54(1)	27	124	97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7	5	1		1				
5급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5급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7	155	3	26	13	6	30	14	
	행정	50	45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14			1				
	보건진료	2			2					
	행정+세무	13	9					1	3	
	행정+사회복지	19	11			1	1	3	3	
	행정+농업	6	2		1		2	1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보건	3			3					
	행정+시설	26	24	1			1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7	3					4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환경+위생		2				2				
	행정+운전+방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공업+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전산+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73	155	8	41	14	6	27	2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행정	70	46	6		5	1	9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6	2				1	8	5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9	16			2	1			
	수의	2			2					
	보건진료	7			7					
	행정+세무	8	7					1		
	행정+사회복지	10	7						3	
	행정+전산	5	4			1				
	행정+농업	5	1		2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4	2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2			2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환경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7	5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7					2		5	
	행정+농업+시설	6	3					2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운전	3	1	1	1					
8급	소계	226	107	5	30	10	10	31	33	
	행정	55	25	1		1	5	11	1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세무	2	2							
	사회복지	11	4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간호	18			4		1	7	6	
	보건진료	4			4					
	시설	14	13			1				
	행정+세무	9	5					1	3	
	행정+사회복지	13	10			1	1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2	2							
	행정+숙기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시설	18	14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운전	5	3	1		1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47	66(3)	2	10	14(1)	4	29	22	
	행정	33	11(3)			2(1)	1	11	8	
	사회복지	6	3				1		2	
	사서	2				2				
	공업	1	1							
	농업	1			1					
	시설	11	8			1		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세무	3	3							
	보건	1			1					
	환경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0	10					8	2	
	행정+농업	4			2		1		1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8	7					1		
	행정+속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1	2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속기	1		1						
	운전	5			2	3				
	사무운영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전문 경력관	소계	1			1					
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36급 상당	비서	-	-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5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